

유가증권신탁계약서

위탁자 : 님
수익자 : 님
계좌번호 :

한 국 씨 티 은 행

유가증권신탁계약서

_____ (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유가증권신탁에 관한 계약(이하 “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목적)

1. 위탁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받은 유가증권을 보관, 관리, 운용 및 처분하도록 수탁자에게 신탁하며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2.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유가증권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신탁한 유가증권에도 이 계약을 적용한다.

제 2 조 (신탁대상 유가증권의 종류 및 가액)

제 1 조에 의하여 신탁한 유가증권의 신탁당시에 있어서의 종류 및 신탁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신탁원본으로 한다.

종 목 명	권 종	액면금액	수 량	신탁가액	비 고

제 3 조 (수익자)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정하며,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 수익자별 수익권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정한 바에 따른다.

수익자 구분	성 명	주 소
신탁원본의 수익자		
수탁이익의 수익자		

제 4 조 (신탁기간)

1. 이 신탁의 신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로 한다.
또한 추가신탁되는 유가증권에 대한 신탁기간도 동일한 시점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2. 제 1 항의 기간은 위탁자 및 수익자와 수탁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 5 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록 또는 신탁의 표시나 기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보호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수탁자가 인정하는 경우,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 및 신탁의 표시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6 조 (수탁자의 업무)

1. 위탁자는 수탁자가 행하는 신탁업무의 범위를 다음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구 분	신탁업무의 범위
신탁유가증권의 관리업무 범위	
신탁유가증권의 운용업무 범위	
신탁유가증권의 처분업무 범위	

2. 위탁자가 신탁업무의 범위를 별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수탁한 유가증권을 보관, 관리 및 처분하고, 원금 및 이자 혹은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신탁재산상의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의 처분은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시에 의하거나 또는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처분하기로 한다.
4. 수탁자는 신탁유가증권의 처분대전 및 신탁유가증권에 의하여 수령한 이자, 배당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수익자에게 교부하게 될 때까지 신탁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는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5. 수탁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현황 및 운용내역을 다음 달 10 일까지 수탁자가 정한 양식에 따라 위탁자에게 서면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운용내역 보고기간 또는 보고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6.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는 그 내용을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이 신탁사무의 일부를 제 3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위임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의 각호로 한다.
 - (1) 신탁재산의 보관사무 및 관리사무
 - (2) 신탁재산과 연관된 사무
 - (3) 신탁재산에 부수하는 사무
8. 수탁자가 전항에 따라 별지 2 의 “유가증권관리사무 위임에 관한 동의서”에 의하여 위탁자와 수익자의 동의하에 신탁사무의 일부를 위임한 경우로서 수임인

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수임인이 위임받은 신탁사무를 수행하던 중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수탁자는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7 조 (수탁자의 책임범위)

1.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탁사무를 수행하기로 하며, 신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그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통상의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이 경우에도 신탁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며, 간접적, 결과적으로 발생한 손해 기타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등 제반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수탁자는 신탁재산중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회사나 증권대체결제회사에 보관,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는 한, 동 증권회사나 증권대체결제회사 등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 및 수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면책된다. 다만, 증권의탁원 또는 금융결제원 이외의 증권회사나 증권대체결제회사에 대하여는 위탁자 및 수익자와 합의하여 지정하기로 한다
4.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사무를 수행하고 수탁자의 고용인, 대리인 또는 수임인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이행하는 한, 신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자, 수탁자의 고용인, 대리인 또는 수임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신탁재산에서 부담하기 한다. 다만, 위탁자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 (신탁재산의 구분관리)

수탁자는 이 신탁재산을 고유재산 및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9 조 (소송절차의 수행)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별도의 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를 수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수익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를 위하여 소송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수탁자 자신의 판단으로 막을 수는 없다.

제 10 조 (의결권의 행사)

신탁재산중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수탁자가 수익자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를 행사하기로 한다.

제 11 조 (조세 및 제비용)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조세, 위탁매매수수료, 명의개서수수료, 보관수수료, 기타 사무처리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그러나,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별도로 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

부담하기로 한다.

제 12 조 (신주 인수권, 전환권 등의 행사)

1. 신탁재산중의 주식,채권에 따르는 신주인수권, 전환권 등 특별한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는 수익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되, 위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수탁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적의 행사하기로 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추가자금이 소요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며,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위탁자가 우선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3. 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추가자금이 권리행사 기일 1영업일 이전까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실권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3 조 (중도해지 및 일부해지)

1.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고 신탁재산을 반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 수익자 연서로서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수탁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제 1 항에 불구하고 관련 법령 및 이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대여한 경우 등 해지가 곤란한 경우에는_수탁자는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을 중도해지하지 않을 수 있다.
3.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 계약상 수탁자의 지위를 사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이익계산 및 지급)

1. 신탁의 이익은 다음 ()호에 정한 날에 원본에 가산하거나 수익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이익계산을 하지 않기로 한다.
 - 신탁종료일의 다음 영업일 (해지일)
 - 신탁계약일로부터 매 ()월이 경과한 날 및 신탁종료일의 다음 영업일
 - 기타 ()
2. 신탁이익의 계산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이익계산일 익일부터 제 1 항에서 정한 이익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제 15 조 (신탁보수)

1. 수탁자는 다음의 보수율표에 의하여 계산된 신탁보수를 제 13 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탁이익 지급일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기본보수	유가증권가액평균잔 x 연 ()%
수익보수	연 ()%를 초과하는 수익 x 연 ()%

- 주)위 수익은 경과기간에 대한 수익을 포함.
2. 위탁자 및 수익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특정방식 또는 특정유가증권에 운용한 수탁분에 대해서는 전항에서 정한 신탁보수에 추가하여 동 운용수익의 연()%를 특정보수로 취득하기로 한다.
 3. 수탁자는 제 1 항, 제 2 항의 신탁보수율에 대하여 경제사정의 변화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6 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수탁자는 이 계약에 따라 신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탁원본의 보전 또는 이익의 지급에 관하여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 (수익자 변경)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제 18 조 (양도 및 담보제공 제한)

이 신탁의 수익권은 수탁자의 승낙 없이는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다.

제 19 조 (신탁종료 및 신탁재산 교부)

이 신탁이 종료한 때에는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승낙을 얻은 후 신탁증서와의 상환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한다.

제 20 조 (인감의 신고)

1. 위탁자 및 수익자는 본인 및 대리인 기타 신탁관계인의 인감(또는 서명감)을 수탁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이 신탁과 관련하여 위탁자, 수익자 기타 신탁관계인이 행하는 모든 통지 또는 의사표시는 제 1 항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 또는 서명에 의하여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직접 교부되거나 요금 선납의 등기우편 또는 팩시밀리로 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이 신탁에 관한 제반서류 등에 사용된 인영(또는 서명)과 제 1 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제출된 인감(또는 서명)을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상위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기타의 업무 처리를 한 때에는 그에 의하여 생긴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수탁자는 자신이 수령한 각종 서면의 진정성립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의무가 없다.

제 21 조 (사고신고 등)

위탁자 및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그 신고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신탁증서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 도난, 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위탁자 및 수익자, 대리인,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인가,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행위능력의 변동이 있을 때

제 22 조 (추가계약)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는 이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를 추가적으로 정하기 위한 별도의 계약(이하 “특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 23 조 (적용법률 및 관할법원)

1.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된다.
2.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당사자가 외국인 또는 국내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전속적 합의관할로 한다.

제 24 조 (기타)

1. 이 계약 또는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사전 고지된 수탁자의 내규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이 계약이 국문본과 영문본으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국문본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 25 조 (신탁계약서)

위 각 조항을 엄수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 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위탁자 및 수탁자가 각각 1 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주소 : _____

성명 : _____ (인)

수익자 주소 : _____

성명 : _____

수탁자 주소 : _____

성명 : (주) 한국씨티은행 점팀장(인)

